

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8.31.

발의 : 이경진의원 외2인

1. 제안이유

2000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6,879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(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및 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등)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를 "7월 · 8월에서 9월 · 10월로 개정하고 "총선거"의 불명확한 자구를 입법취지에 맞게 "지방의회의원 총선거"로 명확하게 개정(안 제4조 제1호)
- 나.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마. 기타 : 없음

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단서중 "총선거"앞에 지방의회의원"을 삽입하고
"7월 · 8월"을 "9월 · 10월"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·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생략)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<u>총선거</u>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<u>7월·8월</u>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<u>지방의회의원 총선거</u>----- ----- 9월·10월-----</p>
<p>제5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</u>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</u></p>	<p>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</u>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

관 계 법 령 발 췌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

-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

-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· 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 ·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,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·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